

# 2026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및 청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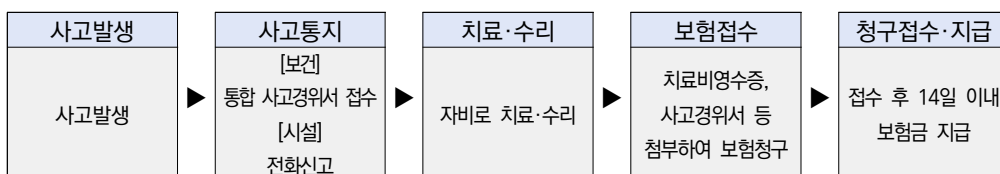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학생 및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 주요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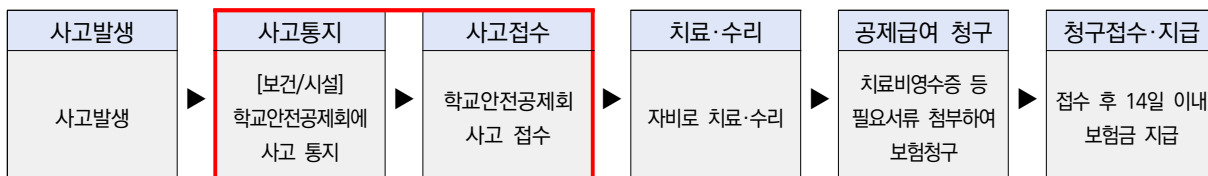
### 1. 보험 청구 절차 변경

2026학년도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보험사가 변경됨에 따라 청구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원활한 사고 입증을 위하여 사고통지 및 사고접수가 선행되어야 하오니 학과에서는 사고 발생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피해학생이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구비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교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보건진료소로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청구 절차]



#### [변경된 청구 절차]



### 2. 연구실 관련 사고 보상 불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는 법률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연구실에서 일어난 사고는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대학 현장실습생 보상공제 추가 가입

2026학년도부터 전공과목 학점 이수를 위해 현장실습(병원, 학교 등)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와 실습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 실습생 보상공제에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관련 증권이 필요한 경우 보건진료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 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무관합니다.

## ☐ 보험가입 주요현황

명칭/증권번호	보험사	가입기간	공제급여종류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기타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2026-06-00179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26. 3. 23. 00:00 ~ 27. 3. 22. 24:00	배상책임공제	1인당	이억원	일십만원	
				1사고당	이십억원		
			대물	1사고당	이억원	일십만원	
			교내·외 치료비	1인당·1사고당	이백만원	오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육기관생활중)	1인당	일억원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오백만원	-			
	상해사망 후유장해	1인당· 1사고당	이억원	-			

명칭/증권번호	보험사	가입기간	공제급여종류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대학현장실습생 보상공제 2026-06-00178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26. 3. 23. 00:00 ~ 27. 3. 22. 24:00	대인배상	1인당·1사고당	오십만원	이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오십만원	
			치료비	1인당·1사고당	이백만원	오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1인당	일천만원	-

## ☐ 주요담보내용

### 1. 배상책임공제

#### 가. 보상하는 손해

- 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학교 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학교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 본 대학교 소유·점유·임차·사용·관리하는 자동차(화물하역 포함), 항공기, 선박,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 포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본 대학교 시설 내에서 대학 소유/임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배상은 보상)
- 본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법률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재학생 상해사망·후유장해

### 가. 보상하는 손해

-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했거나(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상해로 인해 장애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
- 학교생활 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함
  - 1) 학교 수업시간(정규 교육활동 외의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
  - 2) 학교수업 외, 그 밖의 통상적인 학교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시간
  - 3) 재학 중 특별교육행사 참가하는 시간(반드시 학교 교직원 인솔이 있어야 함)
  - 4)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제가입자, 교직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학생의 자해, 자살, 자살 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으로 생긴 손해
- 학생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임신, 출산, 산후기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 사고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 열거된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수상보트, 수영, 스키, 수상스키, 승마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 활동

## 3. 재학생(학부·대학원생) 구내외 치료비

### 가. 보상하는 손해

- 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학교 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본 대학교 학생이 입은 상해 치료비를 보상

###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제가입자, 교직원, 학생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치료비
- 학생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생긴 치료비
-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으로 생긴 손해
-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사고로 생긴 치료비
- 법률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다. 기타사항

- 재학생(학부·대학원)만 해당
- 교외활동 시 학교장 또는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뤄진 활동만 보상

####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상해사망·후유장해 및 치료비

##### 가. 보상하는 손해

- 본교 신입생이 OT 참석 중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본교 신입생이 OT 참석 중에 입은 상해 치료비

#####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OT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공제가입자, 교직원, 학생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치료비
- 「형법」 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으로 생긴 손해
- 학생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생긴 치료비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사고로 생긴 치료비

##### 다. 기타사항

-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 합격 후 OT에 참석한 신입생만 해당

#### 5. 대학 현장실습생보상공제

##### 가. 보상하는 손해

-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제3자의 신체·재물에 대한 사고를 일으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습생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습기관 귀책인 경우 제외)

#####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실습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실습기관(장)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사고
- 실습기관 밖에서 생긴 치료비 또는 손해배상책임
- 실습생과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다. 기타사항

- 이 보험은 전공과목 학점 이수를 위해 현장실습을 가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가입하는 보험과 관련 없음
- 재학생(학부·대학원)만 해당 됨

#### ☐ 기타사항

##### 1. [용어풀이]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비,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인 한방치료 포함

2.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상해사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만 담보합니다.

4. 진단서 등 서류발급비는 보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5. 각 특약사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교내외 치료비/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치료비] 보통약관 제3장 배상책임공제 준용  
 [재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 제2장 상해공제 준용
6. 이 안내자료는 보험약관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며, 안내문 외의 사항인 경우 **보험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보건진료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 청구 절차

### 1.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통합정보시스템-보건진료소-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사고경위서 작성]에서 육하원칙으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 학생은 작성 불가하며, 각 학과에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피해 학생은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2026. 3. 23. 00:00 이전 사고의 경우 다른 보험이 적용됩니다.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지원-보건진료소-공지사항]에서 관련 게시글을 확인하십시오.  
 \* 2025. 3. 23. 00:00 ~ 2026. 3. 22. 24:00 : 13번 공지사항 [KB손해보험]  
 \* 2024. 3. 23. 00:00 ~ 2025. 3. 22. 24:00 : 3번 공지사항 [DB손해보험]

### [보험청구 업무 흐름도]



※ 교내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사고통지 부서가 다릅니다. 보건진료소로 먼저 문의하여 주십시오.

### 2. 제출 서류

#### [사고통지 제출 서류] - 보건진료소 구비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 필수)
2. 사고경위서 (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필수)  
 ※ 통합정보시스템 사고경위서와 별개의 문서이므로 지참하여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3. 재학증명서 (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4. 공제급여 청구 등에 관한 위임장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피해자와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

[공제급여 청구 제출 서류]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공통서류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2. 통장계좌 사본
치료비(학생)	1. 진단서(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카드전표 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4. 초진기록지(진료비 1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우에 따라 100만원 미만건도 요구 가능)
대인손해(제3자)	1. 진단서(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카드전표 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4. 초진기록지(진료비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대물손해(제3자)	1.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2. 수리비 견적서 3.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4.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 서류 ※ 피해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손해방지 비용	1. 비용지출 관련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사망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사고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